#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8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김상욱·김선교·박준태

박덕흠 · 김장겸 · 서범수

성일종 • 조지연 • 박수민

조은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국내 방위산업계의 대·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%에 그치고 있으며,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.

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,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.9%이고,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.2%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.

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·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, 제1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 제목 중 "성장지원"을 "성장 및 기술혁신 등의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"를 "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(이하 "국방중소·벤처기업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성장지원을"을 "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"로, "필요한 때에는"을 "국방중소·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"로, "추진할 수 있다"를 "추진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1호(종전의제4호)중 "성장지원을"을 "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"로, "사항"을 "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국방중소 · 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4.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
- 5. 국방중소·벤처기업 발굴과 육성
- 6. 정보화 지원

- 7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
- 8.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
- 9.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진입 지원
-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・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・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,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·벤처기업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) ① 방위사업 청장은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등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·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선도연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
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<u>성장</u>	제10조(국방중소·벤처기업 <u>성장</u>		
<u>지원</u> 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	<u>및 기술혁신 등의 지원</u> ) ①		
중소·벤처기업의 <u>성장을 지원</u>			
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	<u>성장 및 기술혁신 등</u>		
립하여야 한다.	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(이하		
	"국방중소・벤처기업지원계획"		
	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		
	<u>야 한다</u> .		
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	②		
른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<u>성장</u>	<u>성장</u>		
<u>지원을</u> 위하여 <u>필요한 때에는</u>	및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	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추진할</u>	<u>국방중소·벤처기업지원계</u>		
<u>수 있다</u> .	획에 따라		
	<u>추진하여야 한다</u> .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국방중소 • 벤처기업 성장 및		
	기술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		
	<u>지원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4.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		
	<u>원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5. 국방중소·벤처기업 발굴과		
	<u>육성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<u>6. 정보화 지원</u>	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(생략)

4. 그 밖에 국방중소·벤처기업 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- 7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
- 8.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에 대한 지원
- 9. 국방중소·벤처기업의 국내 외 공급망 진입 지원
- <u>10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-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· 벤처기업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을 수행하는 국방중소·벤처기 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, 보조 등의 방식으 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· 벤처기업지원계획의 원활한 수 립·시행을 위하여 국방중소· 벤처기업 지원단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으며, 국방중소·벤처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<신 설>

- 제10조의2(국방중소・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・벤 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・벤 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(이 하 이 조에서 "선도연구기관" 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 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
  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④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및 절차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